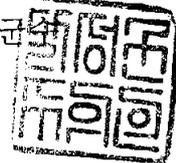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09
----------	------

제출일자 : 2012. 5.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 및 관계법령(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작목적의 점용산정기준을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에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으로 개정함
(안 제2조 별표1)
- 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시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라. 입법예고 : 2012. 3. 29. ~ 4. 17, 의견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점용료 등은”을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으로, “6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당해 년도의”를 “해당 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으로 하고 “당해년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4회 이하로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제8조제1항을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제 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0.75/100</p> <p>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5/100</p> <p>사. 기타목적용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 m^3/sec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원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p> <p>자연취수 및 810m/m이상은 월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m^3당 100원씩 적용 ※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등 적용</p> <p>다. 농업용수 0.05-0.5m^3/sec까지 연액 10,000원 0.5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10,000m^3~200,000m^3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p> <p>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월10,000m^3~200,000m^3까지월액 15,000원 월 1,000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10,000m^3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구 분	산 정 기 준
7.토석, 모래·자갈의 채취	<p>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p>정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정용이 수반 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p>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p>토지가격의 5/100</p>
10. 그 밖의 정용 및 사용	<p>전 각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p>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 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퍼센트)
1.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100퍼센트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50퍼센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 -----.</p>
<p>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는----- -----2,000원미만----- -----.</p>
<p>②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의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p>	<p>②----- -----해당 연도의----- -----.</p>
<p>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규정에 따라----- ----- ----- ----- -----.</p>

<p>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점용료 등의 감액) 소하천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p>	<p>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p> <p>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p> <p>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p> <p>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와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p> <p>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p> <p>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p>
---	--

②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4회 이하로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성

<p><u>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5조(징수) ①<u>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② (생략)</p>	<p>제5조(징수) ①----- -----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u>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u>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p>제8조(시행규칙) ①<u>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8조(시행규칙) <u>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관계 법령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지방세 기본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방세법

제197조(정의) 삭제 <2010.1.1>